

①

○○보 제 호
년 월 일

_____님

아이치현 ○○ 보건소장

취업 제한 등의 통지서

당신은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를 대하는 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 [법]이라고 함.)제 6조에 규정한 결핵에 감염되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.

따라서 법 제 18 조 제 2 항 규정에 근거하여 하기 2 와 같이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.

이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제 77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해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또한 법제 18 조 3 항 규정에 의해 당신은 이 취업제한 기간에 있어서 보건소장에 대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1 증상

(1) 증상 _____
기침, 가래, 발열, 가슴 통증, 호흡곤란, 기타 (_____), 없음

(2) 진단 방법 _____

(3) 초진 년 월 일 _____

(4) 진단 년 월 일 _____

2 취업 제한 내용

(1) 취업 제한이 되는 업무

접객업 기타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업무

(2) 취업 제한 기간

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또는 그 증상이 소실할 때까지

3 기타

(1) 해당 감염증의 증상을 소실한 때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2) 이 처분에 불복하시는 경우는 이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아이치현 지사에게 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(3)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상기 (2) 의 심사 청구 이외에 이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아이치현을 피고로 (공소에서 아이치 현을 대표하는 자는 아이치현 지사입니다.) 、 이 처분의 취소를 호소하는 기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(4) 상기 (2) 의 심사 청구를 하신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에 대해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아이치현을 피고로 한 이 처분의 취소를 호소하는 기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답 당 : 보건지원과